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26호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 이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성장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26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참조: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koyym90@korea.kr

2) 주 소: (우37183)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3) 팩 스: 054-535-985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54-537-78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